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82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6. 3.

다. 회 부 일: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광고·선전의 제한 규정 준수에 있어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u>1.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u> <u>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u> <u>3.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u>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략) <신설>	4. 제34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 규정의 준수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

2. 검토의견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입법례와 같은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에 따라 해외 게임사업자를 통해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법상 각종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그로 인해 해외 게임사의 한국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정적 광고 등의 차단 문제나 결제·환불 절차상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타 입법례¹⁾]

구 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대 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대리업무	과기부·방통위에서 요구하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미지정 시 제재수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해외 사례는 [참고] 자료 참조

이에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²⁾

다만,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 및 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먼저, 대리 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28조제2호·제2호의2·제3호³⁾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의 경우, 해외사업자의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한 ‘작위의무’가 아니라 해외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의무’를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타인을 대신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는 ‘대리’의 사전적·법률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 도입 시 「한·미 FTA」상 ‘현지주재 조항(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위배 여부가 문제된 바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리인 지정이 새로운 사무소 등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위 제2호 중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경우에는 일종의 작위의무로 볼 여지도 있겠음.

마찬가지로, 제4호의 ‘제34조4)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광고·선전의 제한규정의 준수’ 또한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의 준수를 국내대리인이 대신하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⁵⁾

현재 개정안과 같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제1항⁶⁾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한 ‘물품·서류 등의 제출’만을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제1항⁷⁾도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국내 및 해외의 국내대리인 제도 사례를 봤을 때 부작위(금지, 제한 등)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가 없고, 부작위를 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정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의 대리를 규정한 조항(제3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보호법」 제31조의2제1항⁸⁾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과 같이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한 사항만을 대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정안에서 제시한 ‘준수의무’나 ‘금지의무’ 등이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현행법 제12조의3제1항⁹⁾)’ 등 ‘작위의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 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형사처벌이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대리인 제도와 관련 타 입법례도 모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¹⁰⁾

문 의 처
02)6788-5376

10)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참고

국내대리인 제도 관련 해외 사례

구분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칙(GDPR) 제27조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DSA) 제11조	독일 네트워크집행법 (NetzDG) 제5조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지정 방법	서면	서면	-	서면
적용 대상	유럽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러한 처리활동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있거나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 행동에 대한 감시와 관련 있는 유럽연합 역외에 설립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	유럽연합에 시설이 없지만 유럽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	소셜네트워크 제공자	일본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본 국내에 있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국외사업자
대인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하나에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	독일 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국내 자회사나 변호사 등 사외의 자 지정 가능)
대인 역할	GDPR에 규정된 의무 대신 이행, 관할 감독기관 및 정보주체와 협력,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집행절차 적용	회원국의 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령한 결정의 수령,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제공자를 대신하여 수신, 회원국 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와 협력하고 결정을 준수	불법 콘텐츠의 유포 또는 불법 콘텐츠의 유통과 수령으로 인해 특히 삭제된 콘텐츠의 복구 또는 콘텐츠의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벌금 절차에 따른 송달과 독일 법원의 법적 절차에 따른 송달, 사법 결정 또는 집행절차를 개시하는 문서의 송달, 국내 형사소추기관으로부 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응답	총무대신이 실시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통지와 법위반 행위자의 공표에 앞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한 통지를 대리 수령, 총무성과 국외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연락에 대한 컨택포인트
벌칙	-	-	과태료 (최대 50만 유로)	등록 또는 신고 불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